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3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서천호 · 김성원
김대식 · 윤한홍 · 조은희
이성권 · 김예지 · 엄태영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 만큼,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, 평화경제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해야 한

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,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채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,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은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
제9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

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지원을 하는 경우 「남북협력기금법」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고려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생 략)	제6조(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<u>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은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</u>
⑤ · ⑥ (생 략)	⑥ · 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제9조(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) 1. ~ 3. (생 략)	제9조(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) 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<u>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채 정도</u>
4 · 9. (생 략)	5 · 10. (현행 제4호 및 제9호와 같음)
제30조(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 (생 략)	제30조(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제1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지원을</u>

	<u>하는 경우 「남북협력기금법」</u> <u>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</u> <u>할 수 있다.</u>
--	--